

#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제도

## 법정근거

- 건설기술진흥법 제 20조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42조 및 별표3
- 건설기술인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

## 교육이수 시기 및 교육시간

### -기본교육

구분		교육훈련 이수시기	교육훈련기간
건설인 기술	기본교육	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	35시간

### -전문교육

구분		교육훈련 이수시기	교육훈련기간
설계시공 기술인	최초교육	최초로 설계·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	35시간
	승급교육	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	5시간
	특급 기술자 계속교육	다음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설계등 용역(분야별) 책임기술자	5시간
건설사업 관리 기술인	최초교육	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	5시간 또는 90학점
	승급교육	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	-특급, 고급 : 105시간 -중급, 초급 : 70시간
	계속교육	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	-특급, 고급 : 70시간 -중급 : 35시간
	안전관리 담당자 계속교육	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	16시간
품질관리 기술인	최초교육	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	35시간
	승급교육	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	35시간
	계속교육	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	35시간

**KCL 제공교육**

### -건설기술인 등급산정 및 교육배점

구분	설계시공	품질관리	건설사업관리
초급	75점 이상	75점 이상	80점 이상
중급	75점 미만~65점 이상	75점 미만~65점 이상	80점 미만~70점 이상
고급	65점 미만~55점 이상	65점 미만~55점 이상	70점 미만~60점 이상
특급	55점 미만~35점 이상	55점 미만~35점 이상	60점 미만~40점 이상

※자격지수(40점 이내)+학력지수(20점 이내)+경력지수(40점 이내)+교육지수(5점 이내)

※미수행시 과태료 50만원